

#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설치 운영규칙

제 정 2019. 01. 02.  
개 정 2019. 02. 26.  
개 정 2020. 03. 17.  
전부개정 2021. 01. 01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전북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에 설치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(이하 “등재추진단”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제정 2019.1.2.> <개정 2020.3.17., 2021.1.1.>

**제2조(적용범위)** 등재추진단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 정관 및 모든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업무성격에 따라 등재추진단 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0개 지자체의 협약서에 따를 수 있다. <개정 2020.3.17., 2021.1.1.>

**제3조(기능 및 사업)** 등재추진단의 기능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.

- ①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<개정 2021.1.1.>
- ②가야고분군의 보존·관리 지원 등
- ③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서 작성을 위한 학술연구 및 세미나 등 지원 <개정 2021.1.1.>
- ④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행정·재정적 및 관리지원
- ⑤가야고분군 소재 주민협력 지원 및 주민 등 교육에 관한 사항
- ⑥가야고분군의 국내외 홍보 및 해외협력 지원 등
- ⑦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10개 지자체에서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⑧기타 위 각 호와 관련된 연구

**제4조(조직 및 운영 등)** ① 등재추진단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(이하 “등재추진위원회”이라 함),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이라 함)로 구성하고, 세계유산등재를 위해 한시기구로서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총괄하며, 기획홍보팀, 학술연구팀을 두고 사무국장은 전라북도 파견공무원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21.1.1.>

③ 사무국장은 이 규칙 또는 연구원의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전북연구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의 명을 받아 등재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사항 등은 <별표>와 같다. <개정 2021.1.1.>

④ 등재추진단에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,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및 경남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20.3.17., 2021.1.1.>

**제5조(사업계획 등)** ① 사무국장은 등재추진단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3.17.>

② 원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은 등재추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

③ 사업계획 중에서 중요사항의 경우여건의 변화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재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예산서 등)** ① 사무국장은 매년 예산 편성 시기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예산편성 후 지자체 분담금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3.17.>

② 지자체 분담금이 결정되면 사업예산(안)을 편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3.17.>

**제7조(위원회)** ① 위원회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심의, 자문 등을 위해 등재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 등재추진위원회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정책결정, 가야고분

군 등재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, 현안사항에 대하여 최고 의사 결정을 한다.

③등재추진위원회 위원은 22명 이내로 하며,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전라북도지사 : 위원장 <개정 2021.1.1.>
2. 문화재청 담당국장
3. 3개도 담당국장 : 3명 <개정 2021.1.1.>
4. 기초 부단체장 : 7명
5. 3개도 사업수행 출연기관장 : 3명
6. 관련분야 전문가 등 : 7명 이내

④자문위원회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정책 자문, 등재관련 전문·기술적 사항 등을 자문하며,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세계유산 전문가, 지역 유산 전문가 및 10개 지방자치단체 관계관 중에서 위촉한다.

⑤등재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⑥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「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규정」에 따른다.

**제8조(회계관직)** 등재추진단의 회계 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.

- ①징 수 관 : 원장 <개정 2020.3.17.>
- ②분임징수관 : 사무국장
- ③분임재무관 : 사무국장
- ④분임경리관 : 사무국장
- ⑤지 출 원 : 기획홍보팀장
- ⑥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: 세입세출외현금 업무담당자

**제9조(인건비 및 수당 등)** ①등재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「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회의수당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3.17.>

②파견연구원 및 등재추진단을 운영하는 해당 소속 연구원 인건비는 사무

국 운영경비에서 지급한다. <개정 2020.3.17.>

③별표에서 정한 연구원(6급 상당)과 연구원(7급 상당)의 인건비는 임기 제공무원 보수에 준한다.

④제4조 제4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파견연구원에게는 파견보조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3.17.>

⑤제4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파견연구원 및 소속 연구원이 인사발령에 의거 등재추진단으로 근무지 변경 시에는 실비변상적인 경비(주거지원비, 교통보조비 등)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0.3.17.>  
<개정 2021.1.1.>

**제10조(세부시행요령)**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재추진단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광역 지자체 규정 또는 관련 연구원 규정을 준용하거나 예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19년 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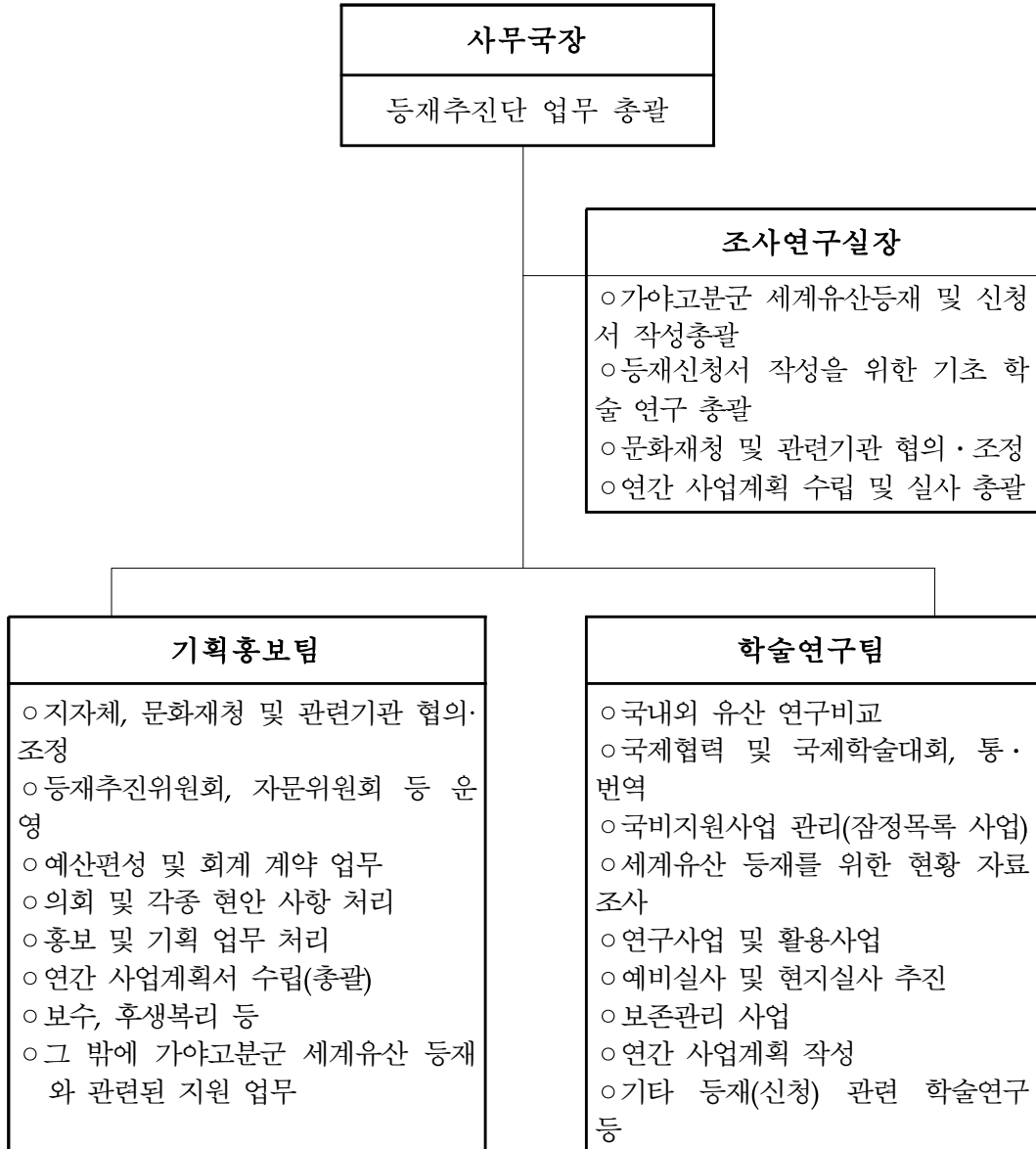
이 규칙은 2020년 3월 17일 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〈별표〉 〈개정 2021.1.1.〉

## 사무국 업무사항



※ 구성인원 10명 이내 : 사무국장(1명), 기획홍보팀(팀장 포함 3명), 조사연구실(1), 학술연구팀(팀장 포함 5명)

## 직위 및 직급

직 위	직 급
사무국장(1명)	5급
조사연구실장(1명)	연구원 가급
팀 장(2명)	6급, 연구원(6급 상당)
팀 원(6명)	6급, 학예연구사, 연구원(6~7급 상당), 출연기관 직원 등